

의안번호	2213061
의 퇴 인	유용원의원
회 답 일	2025.11.19.
추계번호	25D5138

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33조제5항 (장애보상금) 신설	군인이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판정을 받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보상금을 지급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33조제5항 (장애보상금) 신설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성폭력범죄로 인한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에 장애보상금 지급 (안 제33조제5항 신설)

- 개정안은 퇴직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성폭력범죄로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추가재정소요 예상
 - 현행법은 군인이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전역 하거나,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군 복무 중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심신장애 판정을 받은 경우 장애보상금 지급
 - 개정안은 전역 후 오랜 기간이 경과한 후 복무 중 성폭력범죄로 인한 지연성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이 발현된 경우에 장애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장애보상금 지급대상자 수의 증가로 추가재정소요 발생

- 다만, 퇴직 6개월 이후에 군 복무 중 성폭력범죄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판정 건수, 해당 장애에 대한 장애보상금 등급 등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
 - 참고로, 전상¹⁾ 또는 특수직무공상²⁾을 제외한 그 밖의 심신장애 시 일반장애보상금을 지급하며 1급부터 4급까지 구분하고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9배(2025년 기준 5,139만원)~3배(2025년 기준 1,713만원)를 지급
 - 개정안에서 규정한 성폭력범죄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는 일반장애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행법에 따른 일반장애보상금 지급 실적은 2024년 기준 275건, 65억 3,100만원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이미연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미연	02-6788-4661	mylee@nabo.go.kr

1) 적과의 교전(교전)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직무 수행과 관련된 부상 또는 질병
 2)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 수행과 관련된 부상 또는 질병